

작성방법

- 1. ① ~ ③란은 신청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.
- 2. ④ ~ ⑤란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3. ⑥ ~ ⑧란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(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당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에 적습니다.
- 4. ⑨ ~ ⑫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적습니다.
 - 가.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
 - 나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 - 다.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
 - 라. 소득이 없는 배우자
 - 마.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
신청인 제출서류	전·월세계약서, 무료임대주택 확인서, 원천징수 영수증,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·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주민등록표 등본, 지방세세목별과세(납세)증명서(재산세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배우자

(서명 또는 인)

공지사항

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